

의안번호	2209452
의 퇴 인	서미화의원
회 답 일	2025.4.23.
추계번호	25D1961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억 4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2억 1,400만원(연평균 4,3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안전취약계층 지원 실태조사 실시 (안 제34조의5제10항 신설)	104	-	-	110	-	214	43

주: 1. 안전취약계층 지원 실태조사 실시(안 제34조의5제10항 신설)는 의무규정

2.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(보건복지부의 통합지원 실태조사)를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4의5제10항 (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·운용) 신설	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34의5제10항 (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·운용) 신설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를 활용하여 개정안에 따라 3년마다 안전취약계층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추계
 -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, 위기관리 매뉴얼 반영은 기존 인력과 자원으로 수행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려하지 않기로 함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¹⁾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5.4)

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~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3.6%	2.3%	1.9%	2.0%	2.0%	2.0%	2.0%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3년마다 안전취약계층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 예상
-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로 보건복지부의 통합지원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 1건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
 - 보건복지부는 의료와 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노인 의료·돌봄 통합지원제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, 2024년 예산안 기준 1억원 편성
 -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하고 개정안에서 규정한대로 3년마다 실태조사 1건을 실시하므로 2027년, 2030년에 추가재정소요 발생
- 추계결과,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억 4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2억 1,4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2] 안전취약계층 지원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: 2027~2031년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
안전취약계층 지원 실태조사	104	-	-	110	-	21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